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08시 06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	3

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

2014.04.17 조회수 717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50
담당부서	건축과
상위법령	건축법 제57조
조례	여수시 건축 조례 제32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주택건축도로
법령공표일	완화규제
존속기한	2013-08-14
규제시행/폐지일	2013-08-14
규제내용	제32조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) ① 법 제5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. (개정 2013. 8. 14) 1. 주거지역 : 60제곱미터 2. 상업지역 : 150제곱미터 ②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에 따른 분할기준에 의한다.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49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52

Yeosu Web Contents

